

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

1. 선발 예정 인원

시 험 명	직 류	선발예정인원	합 계
제29회 입법고시	일반행정	6명	17명
	법 제	4명	
	재 경	6명	
	사 서	1명	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.(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.)

2. 시험과목

직류	제1차시험(선택형)	제2차시험(논문형)
일반 행정	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한국사 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헌법, 입법과정론,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
법제		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
재경	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입법과정론,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
사서		필수(4) : 도서관경영론, 자료조직론, 정보검색론, 참고봉사론 선택(1) : 사회과학서지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

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

- ※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.
- ※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(입법과정론 포함)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.

3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('53. 7. 1. ~ '93. 12. 31.)

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: 사서직의 경우 1·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.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	응시원서 접수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
제29회 입법고시	2013. 2. 8.(금)	제1차시험	3. 7.(목)	3. 16.(토)	4. 5.(금)
	2013. 2. 13.(수)	제2차시험	4. 5.(금)	4. 30.(화) ~ 5. 3.(금)	6. 14.(금)
	※ 취소마감일 2. 18.(월) 18:00	제3차시험	6. 14.(금)	6. 19.(수) ~ 6. 20.(목)	6. 21.(금)

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013. 2. 8. ~ 2. 13.)
 - 2. 8.(금) : 09:30 ~ 24:00
 - 2. 9.(토) ~ 2. 12.(화) : 00:00 ~ 24:00
 - 2. 13.(수) : 00:00 ~ 18:00 (원서접수 마감일)
 - ※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: 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(본인계좌만 가능)
- 기 타 :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)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. 8.(금) ~ 2. 18.(월) [단,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(2. 18.)에 한해 18:00까지]이며,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거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만 해당).
 - 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사항(직류, 선택과목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

정시험 정보, 지방인재 여부 등)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-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3. 2. 19.(화) ~ 6. 20.(목)까지입니다.

6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시 험 명	TOEFL			TOEIC C	TEPS	G-TELP	FLEX X
	PBT	CBT	IBT		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197	71	700	625	65(Level 2)	625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	352	131	35	350	375	43(Level 2)	375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

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

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(ex. 2011년 1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)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7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기준점수(등급)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

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8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(일반행정·재경직류만 해당)

가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-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)

나. 시행기간 :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
다. 지방인재의 범위

-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)
- ※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
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%입니다.
-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마. 실시방법

-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
-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,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-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바. 증빙서류 제출

-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